

##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기관	기관명	법인등록번호	
		사업자등록번호	
	기관장 성명	전화번호	
	소재지		
인체 유래물은행	은행명	전화번호	
	은행장 성명		
	소재지		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기관장)

(서명 또는 인)

### 질병관리청장 귀하

제출서류	1. 공통 제출서류 가. 시설·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나.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다.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라. 인체유래물등 제공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서 2. 법인인 경우 가. 정관 1부 나. 사업계획서 1부 3. 법인이 아닌 경우: 사업계획서 1부	수수료 10,0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인 경우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법인이 아닌 경우: 사업자등록증	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기관장)

(서명 또는 인)

### 처리 절차

